
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 84 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 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 
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 
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  
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 
니다.

2019년 8월 7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장 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(법률 제16041호, 2018.12.24.) 사항에 맞추어  
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  
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도시공  
원 내 구민 이용 제한, 난개발 노출 등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 
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이 추진됨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  
면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  
설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(안 부칙 제1조)

2019.12.31.로 만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2.12.31.까지로 3년 연장.

#### 나.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 (안 제2조)

- 2018.12.31.로 만료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적용시한 연장
-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 제4항의 개정으로 감면 적용시한이 2018.12.31.에서 2020.12.31.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 감면 적용시한도 연장.
-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로 함 (안 부칙 제3조)

#### 다.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(안 제9조의2)

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(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)으로 실효예정인 도시공원을 공원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'도시자연공원구역'으로 전환됨에 따라, 이에 따른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에 준하는 '도시자연공원구역'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.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.8.28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[참조:세무1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(예관동) 전화 : 02-3396-5105, FAX : 02-3396-8695, E-mail : kiti720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 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(☎3396-510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”을 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, 지상 건축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유효기간)**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**제3조(적용례)**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**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**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· 지방세법 ·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감한다.</p> <p>1. 2016년 12월31일까지 : 100분의 75</p> <p>2.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: 100분의 50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p> <p>제9조의2(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</p>

에 따른 도시·군 계획시설로  
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 
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 
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 
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  
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·지  
정된 토지, 지상 건축물, 「지  
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 
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  
분의50을 경감한다.